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나200759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 변호사 박민수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수, 최겨레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7. 1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5221492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원고들은 청구금액에 대해, 제1심에서 주채무자 D이 변제한 6,800만 원을 반영하여 그의 채무를 2014. 11. 11. 기준 311,600,762원(= 원금 249,955,931원 + 지연손해금 61,644,831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보증채무 최고액 3억 원을 상속분으로 분할하여 원고 A 1억 8,000만 원, 원고 B 1억 2,000만 원을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채무자 D의 채무를 2014. 11. 10. 기준 301,696,267원(= 원금 248,251,361원 + 지연손해금 53,444,906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보증채무 최고액 3억 원을 상속분으로 분할하여 원고 A 1억 8,000만 원, 원고 B 1억 2,000만 원을 주장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다만 제1심 판결 2쪽 18행 ‘법무법인 I’은 ‘법무법인 J’으로 고친다),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논거를 보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기간’이 주채무의 발생 기간인지(원고들 주장) 보증채무의 존속 기간인지(피고 주장)이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기간’은 보증채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29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은 피고의 연대보증에 대해 ‘보증채무의 기간은 3년까지로

한다.’라는 것으로, ‘보증채무의 기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원고들은 공정증서의 요식성,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개정 경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기간’에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동생인 D이 원고들의 딸과 동생인 H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5억 원을 합의 금액으로 하여 그중 2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3억 원을 분할 변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갑 제2호증)에 이어 3억 원의 분할 변제 방법으로 2012. 1. 31.부터 2014. 6. 30.까지 월 1,000만 원씩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가 D의 분할 변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다. 비록 D이 보증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가 D의 채무를 보증하게 된 사정이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에 의하여 지게 될 책임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국한하려는 것이 통상적인 보증인의 의사인 점 등이 반영되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3억 원으로 정하고(제8조 제2항), ‘보증채무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보증채무의 기간’은 주채무의 변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의미와 취지를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주채무자 D의 채무는 3억 원을 2021. 1. 31.부터 2014. 6. 30.까지 30개월간 월 1,000만 원씩 변제하는 것이고, 이자는 없되 원금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주채무자가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신청 등의 사정이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1. 11. 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까지인 2014. 11. 11.까지 주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채무자 D은 2012. 3. 31. 3회차 분할 변제부터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주채무의 변제기를 고려하더라도 ‘보증채무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이지 않고 ‘보증채무의 기간’을

보증채무의 존속 기간으로 보더라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것은 ‘보증기간’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기간’이고 ‘보증채무의 기간’이 ‘보증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주채무자 D의 채무는 합의된 3억 원을 30개월간 월 1,000만 원씩 변제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의 발생 기간을 의미하는 ‘보증기간’을 따로 정할 필요는 크지 않고, 원금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 원리금이 변동될 여지는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3억 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3년의 발생 기간을 거쳐 확정되는 주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오히려 연장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액수와 기간을 제한하려는 피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주채무의 증감 변동을 전제로 하는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는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기간’이 갱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들 측에서 실제로 갱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민법 제440조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 제169조에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 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 조항이므로(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등 참조), 채권자 스스로 보증인과 민법 제44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기간’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요하는 ‘보증채무의 존속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에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경, 판사 배용준, 판사 황승태